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9월 | 2024/09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XML 형식으로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 확대**

지난 PCT 뉴스레터 2023/10 호와 2024/05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서 수정된 부분을 보다 잘 표시하고 XML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이고 통일성있게 활용하기 위해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관련 관청들과의 논의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2024년 10월부터, 수리관청과 관계없이 XML 형식으로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시범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범시행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6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circulars/2023/1656.pdf>

## **2024년 8월 19일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 장애**

아래 시간 동안 ePCT나 ePCT 업무 연속성 서비스를 통한 국제출원이 불가능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2:00 a.m.부터 11:14 a.m.까지(중앙유럽 서머타임(CEST))

그 결과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과 ePCT로 직접 출원을 수리하는 다른 수리관청들에의 출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12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는 출원을 하지 못했지만 해당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출원이 가능한 PCT 출원인들께서는, PCT 규칙 26의 2.3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하는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수리관청에 우선권 회복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sup>1</sup>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은 동 규칙을 적용합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대한민국 특허청(KIPO) -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요건 및 방법

이미 ePCT를 통한 국제출원을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허청(KIPO)은, 국제출원 및 관련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청의 요건과 방식이 담긴 통지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2024년 8월 2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index.html)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KR) 업데이트)

## PCT 정보 업데이트

### CN 중국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수수료)

국제출원의 양도증에 관한 PCT 규칙 51의 2에 따른 특별요건이 2024년 1월 20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규칙에 따른 특별요건들의 통합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sup>2</sup>.

- 국제출원의 출원서 부분에 발명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명자 이름<sup>3</sup>
- 출원인들이 다른 경우 우선권 양도증<sup>3</sup>
- 필요시, 변경된 출원인이 해당 출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서류
- 대리인 지정
- 출원인이 국제출원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예외에 대한 증거
- 해당 시, 전자적 형태의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

또한,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또는 반환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수리관청 및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한 출원료와 가산출원료 면제.
- 국제조사보고서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를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발행한 경우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음.

<sup>1</sup> (역주)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 수리관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sup>2</sup> PCT 제 22조 또는 제 39조제 1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한 내에 이미 준수되지 않은 경우 동 관청은 출원인이 요구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sup>3</sup> 동 요건은 PCT 규칙 4.17에 따라 해당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 충족될 수 있다.

- 출원이 실체심사단계에 진입했고 최초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 기한의 만료 전에(답변이 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출원이 자발적으로 취하된 경우 심사료의 50% 반환 요청 가능.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CN)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이집트 특허청, 유럽 특허청, 인도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미국 특허상표청)

2024년 10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                     |     |
|---------------------|-----|
| 호주 특허청 .....        | KRW |
| 유럽 특허청 .....        | JPY |
| 일본 특허청 .....        | USD |
| 대한민국 특허청 .....      | AUD |
|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 | USD |

2024년 11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                 |          |
|-----------------|----------|
| 캐나다 지식재산청 ..... | CHF      |
| 이집트 특허청 .....   | CHF      |
| 유럽 특허청 .....    | JPY      |
| 인도 특허청 .....    | CHF, EUR |
| 일본 특허청 .....    | USD      |
| 미국 특허상표청 .....  | ZAR      |

2025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지식재산청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CAD로 납부되는 금액과 CHF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수수료표(Fee Table) I(b)에 나온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또한 이날부터 아래의 납부 수수료 금액도 변경됩니다.

|              |     |          |
|--------------|-----|----------|
| 추가조사료: ..... | CAD | 2,317.68 |
|--------------|-----|----------|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T, BR, CA, EG, EP, IN, JP, KR, US)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출원인을 위한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아래의 ePCT 동영상 튜토리얼들이 출원인을 위한 ePCT 동영상 튜토리얼 모음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ePCT Actions([https://www.wipo.int/pct/en/epct/epct\\_actions.html](https://www.wipo.int/pct/en/epct/epct_actions.html))

- ePCT Action:Update file reference(서류참조기호 갱신)
- ePCT-Action:Rule 92bis change request overview(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 개요)
- ePCT-Action:How to use the Rule 92bis change request(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 활용 방법)
- ePCT General Features:Download ePCT-Filing data package for RO/US, IL, CA(RO/US, RO/IL, RO/CA용 ePCT 출원 데이터 패키지 다운로드)

## 국제사무국에의 수수료 납부를 위한 은행명/주소 변경

은행송금을 통해 WIPO의 은행계좌로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또는 유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의 이름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온라인 납부 방법과 각 방법별로 허용되는 통화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WIPO에의 PCT 수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ees/index.html>

추가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finance>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예비심사 파일이 공개되지 않도록 국제예비심사 청구 취하하기

Q: PCT 조약 제 2 장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서 견해서는 발행했는데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이하, IPRP 제 2 장)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답변을 보니, 청구범위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관해 부정적인 진술이 IPRP 제 2 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제예비심사 파일의 내용이 공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습니까?

A: 국제예비심사는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견해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결론은 IPRP 제 2 장에 기재됩니다. IPRP 제 2 장이 작성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견해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절차와 달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에 답변하고, 해당 실체심사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교신하며,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CT 제 33 조 및 제 34 조 및 규칙 66.2 내지 66.6). PCT 제 38 조 제 1 항은 IPRP 제 2 장 작성 전 국제예비심사의 비밀유지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제 2 장 보고서 작성 후 PCT 제 36 조제 1 항 및 PCT 규칙 71.1(a)에 따라 이의 사본을 출원인과 국제사무국(IB) 양측 모두에게 송부하고, 해당 파일 내 일부 문서들의 사본 또한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PCT 규칙 71.1(b) 및 PCT 시행세칙(행정지침) 섹션 602의 2)<sup>4</sup>.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되면 국제사무국은 보고서의 사본을 해당 선택관청들에 송부하고(조약 제 36 조제 3 항(a) 및 PCT 규칙 73.2(a)), 이 선택관청들을 대신하여 해당 보고서 및 기타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모든 문서를 PATENTSCOPE에서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PCT 규칙 71.1(b) 및 94.1(c)).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또한 30 개월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 2 장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는 선택관청들이 요청 시 제 2 장 파일의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칙 94.2(b)).

본인의 출원에 대해 계류 중인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IPRP II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취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선택관청이 파일을 열람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선택관청들을 대신하여 공중에 공개하지 않고 국제예비심사 파일은 PCT 제 38 조제 1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이 유지될 것입니다. 제 2 장 보고서 작성 후 국제사무국이 이를 송부받기 전에 청구를 취하하셔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규칙 73.2(c)). 그러나 제 2 장 보고서가 전자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제 2 장 보고서의 작성과 국제사무국의 보고서 접수 사이에는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청구 취하 통지서는 서식 PCT/IB/372를 통해 국제사무국 앞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접수일로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업로드 시간이 접수시간으로 기록되는 ePCT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PCT에서 해당 출원에 대해 eOwner 또는 eEditor 접근권한이 있으시면, ePCT 액션 “제 2 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취하”(Withdraw Chapter II Demand)로 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방법은 <https://pct.eservices.wipo.int/direct.aspx?UG=4&T=en&N=866> 참고). 이들 접근권한이 없으시면 ePCT 문서 업로드 기능을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가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취하사실을 통지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취하 통지서를 보내시면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에 접수일을 표시하여 처리를 위해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합니다. 이 경우 통지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표시한 날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일 비공개를 위해 청구 취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최대한 빨리 본인의 의도를 알리고 취하 통지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되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국제사무국에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30 개월까지만 국제예비심사 파일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선택관청들은, 보고서가 완성되자마자 국제예비심사 파일 열람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30 개월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열람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즉,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되기 전에도 제 3 자의 열람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sup>4</sup> 모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단락(a) 및 (b)의 적용을, 동 기관이 이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PCT 시행세칙 섹션 602의 2(c)).

## PCT 뉴스레터 2024/03 호 유용한 도움말 정정사항: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때의 결과 및 국내단계에서의 잠재적 구제절차

지난 PCT 뉴스레터 2024/03 호 유용한 도움말에서 국제단계에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내단계에서의 잠재적 구제절차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 부분의 두 번째 문단 첫 줄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수료 납부기한을 놓친 사실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관청의 내부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어 아직 수수료 납부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이 회복(reinstate)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 고급과정 개최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모리셔스 산업재산청(IPOM),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개시

산업재산기구(OBI)(그리스),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개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관련 통지사항 업데이트

###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벨기에 지식재산청(IPObel)

###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BE 벨기에 (관청명)

CA 캐나다 (수수료, 우선권 회복 신청,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

CO 콜롬비아 (위치/우편주소, 전화번호, 수수료, 팩스 이용 중단)

DE 독일 (전화번호)

**GR 그리스 (전자출원)**

**HU 형가리 (국가안보 규정)**

**IN 인도 (우편주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수수료)**

**IT 이탈리아 (위치)**

**LA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MU 모리셔스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자출원)**

**NO 노르웨이 (수수료)**

**RU 러시아연방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취급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 세미나 개최**

**예정된 PCT 웨비나(일본어)**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에 대해 알아보기(Learn the PCT) 동영상 시리즈: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중국어, 러시아어)**